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2. 4. 19.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4월 1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87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(2002. 4. 19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재형

가. 제안이유

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4조의 2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,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1조)
- 휴직자의 연가일수 = $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 일수}$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건은 2002. 3. 28 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되고 2002. 4. 8 국가공무원복무규정증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해,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,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<주요개정내용>

- 안 제14조의2에서는 조 제목을 “ 토요전일근무제 ”에서 “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”로 개정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휴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, 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현행 제1항의 휴직일수와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안 제3항과 안 제4항으로 하며 안 제2항을 신설하여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현행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, 우리 구의 경우에는 동 개정조례안이 확정·시행되더라도 월드컵대회와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는 2002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유웅봉 위원) : 주5일 근무제 실시는 국장급 이상도 해당되는가?
- 답변요지(김재형 총무과장) : 해당됨.
- 질의요지(유웅봉 위원) : 민원부서는 어느 부서인가?
- 답변요지(김재형 총무과장) : 민원봉사과, 지적과, 교통행정과, 세무1과, 세무2과, 산업위생과임.
- 질의요지(유웅봉 위원) : 사회복지과는 민원부서가 아닌가?

○ 답변요지(김재형 총무과장) : 민원부서는 아니지만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은 없도록 조치될 것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일자 : 2002.04. 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휴직 후 복직한자도 연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함.
(안 제14조의2)
- 나.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,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21조)

$$\textcircled{○}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(\text{월}) - 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 일수}$$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(1) 지방공무원법(2001. 1.29 법률 제6400호) 제59조
- (2) 국가공무원복무규정(2001.10.31 대통령령 제17399호) 제13조 및 제1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- 다. 협의 : 서울특별시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 시달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 : 생략함

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
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-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의 제목 “(토요전일근무제)”를 “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”로 하고, 동조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전원”을 “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전원”으로 하며, 동조제2항중 “토요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한다.

제2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미만은 절삭한다

$$\textcircled{O}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제24조제5항중 “한국방송통신대학”을 “한국방송통신대학교”로 “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”을 “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”으로 각각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제14조의2(토요전일근무제)	제14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
<p>①주민 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</p> <p>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</p>	<p>제14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-</p> <p>-----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 -----</p> <p>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-----</p>
<p>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· 휴직일수·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 <p>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/p> <p>(신 설)</p>	<p>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결근일수·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</p> <p>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</p> <p>이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우 0.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, 0.5일미만은 절삭한다</p> <p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$\frac{12\text{월}}{\text{12월}-\text{당해년도 휴직기간(월)}} \times \text{당해년도 연가일수}$</p> <p>③ ~ ④(현행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음)</p>
<p>② ~ ③(생략)</p>	

제24조(특별휴가) ①~④(생 략)
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
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
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
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
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.
⑥~⑨(생 략)

제24조(특별휴가) ①~④(현행과 같음)

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
—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

⑥~⑨(현행과 같음)